

【붙임 1】

2018년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재공모 안내

2018. 6.



통합의료진흥원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Institute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사업 추진배경	2
3. 지원목적	2
4. 사업 추진방안	3

II. 세부추진내용

1. 통합의료 임상·전임상연구	4
------------------------	---

III. 신청 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9
2. 신청관련 유의사항	12
3.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13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의 선정	15
2. 연구과제의 관리	17

[붙임] 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18
--------------------------	----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 통합의료 탐색과제: '17년도 연구과제 중 성과 연계형 사업 및 신규 공모형 사업 등 필요 연구사업(통합의료 임상·전임상 연구) - 재공고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 총 400백만원 이내
- 계약방식 : 외부 공모를 통한 계약
-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심사에 의한 선정

[통합의료 탐색과제 : 통합의료 임상·전임상연구(재공고)]	
지원비용 범위	총 400백만원 이내 * 신청금액과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
지원 대상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 -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된 과업 지원비용에 대해서는 과업 결과 제출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정산과정을 거칠 예정임
- ※ 부적절 집행내역 발견 시 해당항목 지원 사업비에 대한 환수 및 해당기관 패널티 부과 예정(후속 진행 유사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2 사업의 추진배경

-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등 통합치료방법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양·한방 협력진료시스템과는 달리 통합의료는 양·한방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완대체의학까지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로, 기존의 임상센터와는 달리 특성화·차별화된 통합임상시험을 통한 치료연구를 지원
- 통합의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도 또한 높은 만큼, 각국의 경험과 첨단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료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

3 지원목적

- 양·한약 병용투여 임상연구를 위한 전단계인 전임상연구를 실시하여 임상연구의 기반 확보
-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아이템에 대한 난치성 질환의 양·한약 병용투여 임상연구를 진행하여 통합의료 진료지침서 마련
- 통합의료 서비스 개발 및 확대·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통합의료 국제적 인프라 구축
- 지역 의료서비스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4 사업추진방안

□ 유기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구분	담당	역할
전담	보건복지부	- 연구사업 관리 감독
	대구광역시	
주관	재단법인 통합의료진흥원	- 개별 세부과제 진행 · 세부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 개별 세부과제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 사업자 선정·연구비 지원 등 - 과제 관리 · 보고서 작성 · 연구비 집행-정산 ·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관리
사업 진행	연구과제수행기관 및 연구 책임자	- 사업 내용·구성 제안 - 프로젝트 수행 - 세부 추진실적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세부추진일정

- 2018년 6-7월 : 사업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연구협약, 연구비 지급
- 2018년 8월 : 연구시작
- 2018년 10월 : 중간평가
- 2019년 1월 : 최종평가 및 결과 보고

※상기 추진일정 및 평가단계·방식은 진행사정 및 개정되는 규정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8								'19	
	5	6	7	8	9	10	11	12	1	2
사업추진 및 관리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연구 시작		중간 평가		연구 종료	최종 평가 및 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

II. 세부추진내용

[통합의료 탐색과제 : 통합의료 임상·전임상연구 (재공고)]

□ 지원 목적

- 양·한약 병용투여 임상연구를 위한 전단계인 전임상연구를 실시하여 임상연구의 기반 확보
- 암 등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양·한방 통합 약물 및 치료기술 활용을 통하여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진료프로토콜 개발

□ 지원내용 및 분야

- 통합의료 임상연구
-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 지원 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과제 선정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 이내

세부분야	연구비
통합의료 임상연구	* 각 5천만원 이상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 특기사항

○ 최소요구성과

세부분야	최소요구성과
통합의료 임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연구 완료(계획서 상의 마일스톤 달성) - 최종 결과 보고서 - SCI(E)급 논문게재 1편 이상(연구 종료 후 2년이내)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상연구 완료(계획서 상의 마일스톤 달성) - 최종 결과 보고서 - SCI(E)급 논문게재 1편 이상(연구종료 후 2년이내) - 관련특허등록 1건 이상(연구종료 후 2년이내)

-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적합성
- 통합의료관련 (전)임상연구 수행 역량의 우수성
 - 통합의료 관련 (전)임상연구 수행 시설, 수행 실적, (전)임상연구 수행 연구자 수, (전)임상연구 관련 운영시스템실태, IRB운영 실태 등
- (전)임상연구 수행 연구자로서의 적합성
 - 기존 시설 및 장비, 연구책임자의 역량, 잠재적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수
- 소속기관의 지원 상황
 - (전)임상연구 공간제공 규모, 인력지원 규모,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항목별 예산배분 비율, 장비 선정의 적절성 등
- 본 사업의 세부사항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준하여 진행됨

○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과 제 명	통합의료 탐색과제: 통합의료 임상·전임상연구							
지원규모 및 기간	세부분야	연구비	기간					
	통합의료 임상연구	과제당 5천만원 이상	사업기간 이내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 예산 환경에 따라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p>▶ 최종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Item에 대한 난치성질환의 양·한약 병용투여 임상연구 ◦ 암 뇌졸중, 치매, 당뇨합병증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통합 약물 및 치료기술 활용을 통하여 양·한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진료프로토콜 개발 ◦ 양·한약 병용투여 임상연구를 위한 전단계인 전임상연구를 실시하여 임상연구의 기반 확보 ◦ 난치성 질환의 양·한방 병용 또는 복합조성물 후보물질 개발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통합의료 임상연구를 다년간 수행한 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함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통합의료 임상연구</th> <th style="width: 50%;">통합의료 전임상연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술+침 임상시험 침+양약 임상시험</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약+양약 임상시험 양약+한약 병용투여 양약+한약 동시투여</td> </tr> </tbody> </table>				통합의료 임상연구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수술+침 임상시험 침+양약 임상시험	한약+양약 임상시험 양약+한약 병용투여 양약+한약 동시투여	
통합의료 임상연구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수술+침 임상시험 침+양약 임상시험	한약+양약 임상시험 양약+한약 병용투여 양약+한약 동시투여							
<p>▶ 특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출 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세부분야</th> <th style="width: 50%;">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통합의료 임상연구</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연구 과제 계획서 통합의료 임상연구 수행 자료(해당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통합의료 전임상연구</td> </tr> </tbody> </table>				세부분야	제출서류	통합의료 임상연구	연구 과제 계획서 통합의료 임상연구 수행 자료(해당자)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세부분야	제출서류							
통합의료 임상연구	연구 과제 계획서 통합의료 임상연구 수행 자료(해당자)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함

<통합의료 임상연구>

- 한의학 및 의학 관련 연구진이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한의학 임상 및 의학 임상의 필수 참여
 - 한방병원 및 병원을 포함하는 다기관 임상연구 시 평가 가점 부여
- 현재 수행 중인 혹은 최근 2-3년간 수행했던 통합의료 관련 연구와의 관련성 혹은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가점부여 (계획서 제출 시 관련자료 첨부)
- 임상연구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한 연구추진 일정대로의 연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음
- 임상연구 지원과제의 IRB 심사 서류 및 임상연구 진행일정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보건복지부 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고시 등을 숙지하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 연구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납 및 타 과제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사업기간 내에 과제 제목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통합의료진흥원에 공문과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함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 전임상연구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한 연구추진 일정대로의 연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음
- 전임상연구 지원과제의 IACUC심사 서류 및 전임상연구 진행일정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보건복지부 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고시 등을 숙지하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 연구수행 계획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연구비 책정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 규모에 맞는 연구비를 책정한 다음 산출근거 기준을 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연구비를 신청한 경우 평가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현재 수행 중인 혹은 최근 2-3년간 수행했던 통합의료 관련 연구와의 관련성 혹은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가점부여 (계획서 제출 시 관련자료 첨부)
- 전임상연구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한 연구추진 일정대로의 연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세부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준하여 진행됨

▶ 주요 평가 항목

- 최소요구성과

세부분야	성과지표
통합의료 임상연구	- 임상연구 완료(계획서 상의 마일스톤 달성) - 최종 결과 보고서 - SCI(E)급 논문게재 1편 이상(연구 종료 후 2년이내)
통합의료 전임상연구	- 전임상연구 완료(계획서 상의 마일스톤 달성) - 최종 결과 보고서 - SCI(E)급 논문게재 1편 이상(연구종료 후 2년이내) - 관련특허등록 1건 이상(연구종료 후 2년이내)

-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적합성
- 통합의료관련 (전)임상연구 수행 역량의 우수성
 - 통합의료 관련 (전)임상연구 수행 시설, 수행 실적, (전)임상연구 수행 연구자 수, (전)임상연구 관련 운영시스템실태, IRB운영 실태 등
- (전)임상연구 수행 연구자로서의 적합성
 - 기존 시설 및 장비, 연구책임자의 역량, 잠재적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수
- 소속기관의 지원 상황
 - (전)임상연구 공간제공 규모, 인력지원 규모,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항목별 예산배분 비율, 장비 선정의 적절성 등

□ 향후일정

- 2018. 6. 27. ~ 2018. 7. 10. : 공고 및 접수 마감
- 2018. 7. 12. ~ 2018. 7. 19. : 서면평가 및 구두평가
- 2018. 7. : 과제 협약
- 2017. 8. : 연구 개시

※ 상기 추진일정 및 평가단계·방식은 진행사정 및 개정되는 규정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청 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49호, 2014.10.8.)>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통합의료 임상연구를 다년간 수행한 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 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선별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 및 신청 제한

□ 연구개시 예정 시기 : 2018년 8월

□ 참여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제 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 11조 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본인의 참여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보안 관련 사항

- 연구수행자는 본 사업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합의료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만약,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계획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공모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응모기관의 부담으로 함
- 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통합의료진흥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계획서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의료진흥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자는 계획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신청관련 유의사항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한 연구수행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신청 전 숙지 사항

- 신청 연구자는 원하는 각 지원과제별 세부 신청요건 및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성실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 문서의 제출을 협약 시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
- 위탁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 지정 위탁 정산기관
 - 회계감사비용 사항
 - ① 연구개발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 ②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 협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통합의료진흥원의 협의를 의해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에도 연구과제 선정을 취소함

- 연구과제별 연구기간 등 연구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을 임의변경 불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12조 5항 별표2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3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연구계획서 서식을 공고문에서 다운로드받아서 작성

□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한 : 2018. 6. 27. ~ 2018. 7. 10.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7

(재)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8층 연구교육사업단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

□ 제출서류

- 계획서 각 10부 : [아래 작성지침 참조]
- 계획서: A4 세로형 좌측제본, 총 20 ~ 30 페이지 이내

구 분	규 격	제출수량
계획서 (반드시 제본할 것)	- 백색용지 A4사이즈/중(210mm×297mm)으로 작성 - 표지 · 원본 1부 : 소속기관명 표기 · 사본 9부 : 백지 ※내용은 컬러, 흑백 제한 없음 ※제 본: 접착제 제본, 좌측면철, 양면인쇄	원본 1부 사본 9부
C D 또는 USB	- 계획서 및 별도 제출서류 일체의 내용을 수록 (PDF 권장)	1식

- 공모참가 신청서, 청렴이행계약서 각 1부: 연구책임자 명의
- 연구 책임자 선임계 1부

제출방법

-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방문 혹은 우편 송부
(이메일로 선제출 후 원본 제출 가능)

공모관련 문의사항

- (재)통합의료진흥원 연구교육사업단 담당자 박미정 (T.053-670-5986)

VI. 평가 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의 선정

□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공모 → 계획서 접수 → 평가 → 연구과제 선정 → 사업 계획서 승인 순으로 진행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PT심사) → 사업기관 선정 → 공모결과 발표 → 배정비용 확정 →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 1차, 2차 심사 시 통합의료진흥원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 대면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제안내용과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며, 협상결과에 따라 재공모할 수 있음

□ 계획서 심사 · 평가 방법

- 세부 평가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후 별도 공지 예정

- 1차 평가 : 계획서 내용 및 산출내역서 검토

- 1차 평가에서 2차 평가 대상 기관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 2차 평가

- 일시 및 장소 : 평가대상자에 별도 통보

-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 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평가 : 세부항목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소수점 둘째자리까지)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 가산점 외 평가항목점수 상위기관 선정
- 가산점 외 심사항목 점수도 동점인 경우 :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최종평가결과 발표 : 평가이후 7일 이내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 주요 평가기준

사업구분	지원분야	평가 기준	
		서면평가	대면평가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통합의료 임상·전임상연구	-사업목적의 이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연구자 역량, 인력구성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의 이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연구자 역량, 인력구성의 적정성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제안자의 사업계획서와 제출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평가는 통합의료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협약절차

- 연구수행자를 선정하여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될 경우에 협약 체결
- 협의 및 협약 체결 시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연구수행자와 조정할 수 있음

2 연구과제의 관리

□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때 반드시 통합의료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의료진흥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단,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연차평가

- 각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총 연구기간이 종료될 과제에 대하여 「연구 결과보고서」를 종료 1개월 내에 통합의료진흥원장에게 제출함
- 통합의료진흥원은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함

2018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① 인건비	<p>【사용용도】</p>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정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내부 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부 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td> </tr> </tbody> </table>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p>【계상기준】</p> <p>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산정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td> </tr> </tbody> </table> <p>※“해당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p>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직접비	① 인건비	<p style="text-align: center;">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p> <p>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p> <p>※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p> <p>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p> <p>※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p> <p>※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미지급인건비 계상)</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p> <p>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p> <p>※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p> <p>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p> <p>【참고사항】</p> <p>○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p> <p>○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p> <p>○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하는 경우 「협약</p>
-----	----------	---

	<p>① 인건비</p>	<p>변경 처리기준」 붙임 8, 9의 서식을 활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p>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원에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직접비	<p>② 학생 인건비</p>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사과정 : 월 1,000천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천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천원 ④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p>※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필수 이행사항 :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참고5의 서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정산시 제출

③ 연구 장비 · 직접비 · 재료비	<p>【사용용도】</p> <p>1. 연구시설·장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설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p> <p>2. 재료비·전산처리비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p> <p>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p> <p>【계상기준】</p> <p>○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참고사항】</p> <p>○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이상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구축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심의 진행</p> <p>※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p> <p>○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 비치할 것</p> <p>○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강화)</p> <p>※ 정산 시 해당 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p> <p>○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p> <p>※ 당해연도 해당과제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 진흥원장의 승인 및 과제종료 2개월 전 구입과 설치 완료</p> <p>○ 현물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당해연도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	--

직접비	<p>③ 연구 장비 · 재료비</p>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 시설 · 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 · 시설 · 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컴퓨터 구입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며, 영리기관은 당초 연구 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p>④ 연구 활동비</p>	<p>【사용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 부서를 의미함 4. 시험분석 · 임상시험 등 : 시험 · 분석 ·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분야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과제의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모집 광고료, 임상시험 보험료는 해당과제의 최종연도(단계 최종연도 포함) 종료일내에서 계약 가능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비 등 : 특허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직접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 연구개발비 규모(협약시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 ※ 연구개발비 이월과제의 경우 협약액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 세부과제(위탁과제 제외)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세부) 1과제 : 가산금 없음
 - 세부 1개기관(과제) 추가시 정산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

-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불인정 사항】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주관, 세부, 위탁포함)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④ 연구 활동비

직접비	<p>⑤ 연구 과제 추진비</p>	<p>【사용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여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4. 연구과제 수행식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식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연구과제 수행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p>⑥ 연구 수당</p>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p>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직접비	<p>7 위탁 연구 개발비</p>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 처리기준」 붙임 6의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보고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40%초과 계상·집행 금액 ○ 연구계획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⑧ 간접비	<p>【사용용도】</p>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 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 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p>
-----	----------	---

		<p>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p>【계상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p>※ 영리기관은 정산 실시</p>
--	--	---

간접비 ⑧ 간접비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